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65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 김상훈·지성호·황보승희

김은혜 · 정점식 · 이양수

김영식 · 최춘식 · 강기윤

배현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(수도권의 경우 4억원) 이하이고,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%를 금년 말까지 경감하는 특례는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혼인율 감소 및 저출산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,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 나로 주택구입비 부담에 따른 주거 불안정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신 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을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6억원(수도권의 경우 7억원) 이하, 전용면 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, 특례 적용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 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2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1일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3억원"을 "6억원"으로, "4억원"을 "7억원"으로, "60제곱미터"를 "85제곱미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안 행 제36조의2(생애최초 주택 구입 제36조의2(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)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) ① 혼인한 날(「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) 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할 예정인 사람(이하 이 조에 서 "신혼부부"라 한다)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 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(「지방세법」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유상거래(부 담부증여는 제외한다)로 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---2023년 12월 31일-----감한다. -----1. • 2. (현행과 같음) 1. • 2. (생략) 3. 「지방세법」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 으로 한다) 이하이고 전용면 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----85제곱미터-----을 취득할 것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